

□ (주)우리로지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[시정명령 2건]

자산관리 회사	위반회사	위반사항		처분사항(안)	
		위반내용	근거규정	조치종류 및 조치내용	근거규정
■ 법인명: 우리자산 신탁 /이종근	(주)우리로지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	■ (주)우리로지스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는 최대주주(아이비 케이투자증권(주))가 발행주 식의 50%를 초과(65.37%, 2024 년 1분기 투자보고서 기준) 소 유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 (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, 발행주식의 50%이하)를 위반함 - 주식 공모 후 잔여주식을 아 이비케이투자증권(주)이 인수 (‘22.9.16.)하였으나 인수한 날 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함	부동산투 자회사법 제15조 제1항	■ 시정명령 -주식 분산가능 시기와 함께 진 행사항을 분기 별로 보고할 것	부동산투자회 사법 제39조제2항 법시행령 제41조제4항
	(주)우리로지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	■ (주)우리로지스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(‘22.8.10)시 인가조건(“사업계획상 수수료 (인수수수료, 대출취급수수료 등) 및 차입조건(대출금리, 대출기간 등)의 변동사항 발생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, 필요시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”)이 부여 되었음에도, ‘22.08.12., ‘22.08.18. 자산관리계약 변경(기본수수료 변경)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음	부동산투 자회사법 제9조 제3항	■ 시정명령 -미보고한 사항을 즉시 조치하고, 향후 동일한 위 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고 관 련 업무 철저	부동산투자회 사법제39조제 2항 법시행령 제41조제4항